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23호 2014. 2. 26.(수)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2014-1076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2014-1077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4
- 사천시 조례 제2014-1078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15
- 사천시 조례 제2014-1079호 사천시 상인증장애인 평생교육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사천시 조례 제2014-1080호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사천시 조례 제2014-1081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사천시 조례 제2014-1082호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31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2014-549호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시행규칙폐지규칙— 3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자가” 를 “각 호의 사람이”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KT사천지사장
7.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
8. 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장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3)

9.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장

10.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사천팀장

11. 통영해양경찰서사천파출소장

12. 사천시 총무국장

13.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14.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중 “재난상황종합관리업무담당과장” 을 “안전관리 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기만료전” 을 “임기만료 전”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4)

사천시 조례 제10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  
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  
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5)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 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 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6)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비슷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7)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안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8)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9)

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0)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1)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2)

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안전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

# 사 천 시 공 보

## 제323호(13)

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시지
4. 시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 사 천 시 공 보

제 323 호 (14)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5)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6)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7)

##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8)

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의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 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19)

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0)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2)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3)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4)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의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5)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3호, 제6조제4호 중 “발달장애인” 을 “중증장애인”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증장애인중 만18세” 를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할 수 있다.” 로 하고,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6)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평생교육시설 수탁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위탁운영 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7)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제7조 중 “시설장” 을 “원장” 으로, “할때” 를 “할 때” 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8)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7일이상” 을 “7일 이상” 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3회이상” 을 “3회 이상” 으로, “결근자” 를 “결근한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직원간” 을 “직원 간” 으로, “불화 조성자” 를 “불화를 일으킨 사람” 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가목 중 “금치산·한정치산” 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유발한 자” 를 “일으킨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회계상” 을 “회계 상” 으로 “유발한 자” 를 “일으킨 사람” 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나목 및 라목, 같은 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 같은 조 같은 호 바목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29)

[별표 1]

##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사천어린이집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동서어린이집	사천시 동서1길 61(동동)
대방어린이집	사천시 대방2길 34(대방동)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시 한내4길 107(벌리동)
동부어린이집	사천시 쌍피들길 23(향촌동)
꿈피오어린이집	사천시 용현면 주문길 18
또록이어린이집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별표 3]

## 보육교직원의 특별휴가 일수(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 형제자매	1일
출 산	· 본인	90일
	· 배우자	5일
유산 또는 사산	· 본인	최대 90일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입 양	· 본인	20일

# 사 천 시 공 보

제323호(30)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 이내” 를 “20명 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323 호 (31)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323 호 (32)

##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4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